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(한병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190 발의연월일: 2025. 1. 2.

발 의 자:한병도・이개호・안규백

이해식 • 서미화 • 임오경

윤준병 • 한정애 • 박수현

부승찬 • 위성곤 • 윤호중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법률은 「대한민국헌법」에 명시된 대통령의 사면·감형 또는 복권에 관한 내용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음.

그런데, 내란과 외환, 반란의 죄는 헌법의 존립을 해치거나 헌정질 서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로써, 해당 범죄를 저지른 자를 사면 의 대상으로 정하면 안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.

이에, 내란과 외환, 반란의 죄를 범한 자는 사면·감형 또는 복권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려는 것임(안 제9조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

사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의2(사면 등의 제한) 제8조 및 제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사면·감형 및 복권을 할 수 없다.

- 1. 「형법」 제2편제1장의 죄를 범한 자
- 2. 「형법」 제2편제2장의 죄를 범한 자
- 3. 「군형법」 제2편제1장의 죄를 범한 자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9조의2(사면 등의 제한) 제8조
	및 제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
	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
	는 사면·감형 및 복권을 <u>할</u>
	<u>수 없다.</u>
	<u>1. 「형법」 제2편제1장의 죄를</u>
	<u>범한 자</u>
	<u>2. 「형법」 제2편제2장의 죄를</u>
	<u>범한 자</u>
	3. 「군형법」 제2편제1장의 죄
	<u>를 범한 자</u>